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7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28일

발 의 자 : 성백진, 박양숙, 김창원,
이복근, 김선갑, 김혜련,
오승록, 권미경, 이병해,
박마루, 유 청 의원(11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범위가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의원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범위에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 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제6조(지원범위)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u></p> <p><u>6. (현행 제5호와 같음)</u></p>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조 제5호 신설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조 제5호 신설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을 추가하고 있으나,
- 장애인별 장애유형별 대체수단 지원항목(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장애의 유형·정도 등)이 복잡 다양하고, 대체수단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 시각 : 49종

구 분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출력기	데이지플 레이어	광학문자 판독기	화면확대 s/w
종류	4	31	5	2	3	3	1

■ 지체/뇌병변 : 18종

구 분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
종류	3	9	4	1	1

■ 청각/언어 : 31종

구 분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훈련 s/w	음성증폭기	골도음향 기기	기타	무선신호기
종류	5	6	4	8	1	2	5

붙임 : 2017정보통신보조기기 리플릿 1 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분석관(주무관) 송경수

☎ 02-3705-1276

e-mail : kssong1@seoul.go.kr